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76
------------	------

제출연월일 : 2009. 8. 31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 2009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 시 건립한 상설전시관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기존 분리 징수한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와 엑스포 주제관 관람료를 단일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항포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와 주제관 관람료 단일화(안 제5조, 안 제7조의 2)
 - 입장료와 엑스포 주제관 관람료 분리 징수 → 통합 징수
- 엑스포 주제관 관람료 삭제함(안 제7조의 2)
 - 엑스포주제관 관람료를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에 포함
- 오토캠핑장 및 야영장 시설이용료를 대상별로 차등 부과(안 제7조 1항)
 - 오토캠핑장 및 야영장 시설이용료

구 분	당 초(원)	조 정(원)			비 고
		1일/1인기준	어른	청소년	어린이
오토캠핑장	8,000	10,000	8,000	6,000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야 영 장	6,000	9,000	7,000	5,000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9. 7. 7~ 7. 27(21일간)
- 관련법령 및 근거 : 관광진흥법 제67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의2를 삭제 한다.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을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입장요금표 (제5조와 관련)

(단위: 원)

구 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 인	6,000	4,000	3,000
단 체	5,000	3,000	2,000

[별표 2]

○ 시설이용료(제7조제1항과 관련)

구 分		이 용 료(원)		비 고
주 차 료	이륜차	500		
	승용차	2,000		경승용차(1,000cc이하) 50/100경감
	버스	3,000		
	화물차	3,000		
트램카	이용구분	1회이용권	자유이용권	
	어른	1,000	2,000	자유이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회장내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청소년·군인			
	어린이			
물놀이 시설	어른	5,000		입장료와 연계한 패키지 이용시 당항포 입장료 50% 할인
	청소년·군인	4,000		
	어린이	3,000		
자전거 대여	대여시간	2시간	2시간초과시 시간당	
	2인용	3,000	2,000	
	1인용	2,000	1,000	
	어린이용	1,000	500	
펜션 53.0m ² (16평형)	성수기	1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기준 : 1일/4인 - 1인 추가시마다 이용료 10,000원 추가 • 성수기: 7.20~8.25 • 비수기: 나머지 기간 -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 주중: 일~목요일 • 이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비주말	100,000		
	비주중	80,000		
오토 캠핑장	어른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기준 : 1일/1인 • 이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청소년·군인	8,000		
	어린이	6,000		
야영장	어른	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기준 : 1일/1인 • 이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청소년·군인	7,000		
	어린이	5,000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7조의2(엑스포주제관 관람료)엑스포 주제관 관람료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u></p>	<p><u>(삭제)</u></p>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 입장요금표(제5조 관련)				[별표 1] ○ 입장요금표(제5조 관련)			
구 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구 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 인	4,000	2,500	1,500	개 인	6,000	4,000	3,000
단 체	3,500	2,000	1,000	단 체	5,000	3,000	2,000
[별표 2] ○ 시설이용료(제7조제1항과 관련)				[별표 2] ○ 시설이용료(제7조제1항과 관련)			
구 분	이 용 료	비 고		구 분	이 용 료	비 고	
주 차 료	이륜차	500		주 차 료	이륜차	500	
	승용차	2,000	경승용차(1,000cc이하) 50/100경감		승용차	2,000	경승용차(1,000cc이하) 50/100경감
	버스	3,000			버스	3,000	
	화물차	3,000			화물차	3,000	
트램 카	이용구분	1화이용권	자유이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회장내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트램 카	이용구분	1화이용권	자유이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회장내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어 른	1,000			어 른	1,000	
	청소년	2,000			청소년·군인	2,000	
	어린이				어린이		
물 놀 이 시 설	어 른	5,000	입장료와 연계한 패키지 이용시 당항포 입장료 50% 할인	물 놀 이 시 설	어 른	5,000	입장료와 연계한 패키지 이용시 당항포 입장료 50% 할인
	청소년	4,000			청소년·군인	4,000	
	어린이	3,000			어린이	3,000	
자 전 거 대 여	대여시간	2시간	2시간 초과시 시간당	자 전 거 대 여	대여시간	2시간	2시간 초과시 시간당
	2인용	3,000	2,000		2인용	3,000	2,000
	1인용	2,000	1,000		1인용	2,000	1,000
	어린이용	1,000	500		어린이용	1,000	500
펜 션 (53.0m ²) 16평형	성수기	150,000	• 이용기준 : 1일/4인 - 1인 추가시마다 이용료 10,000원 추가 • 성수가: 7.20~8.25 • 비수가: 나머지 기간 -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 주중: 일~목요일 • 이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 물놀이시설 이용시 이용료의 50% 할인	펜 션 (53.0m ²) (16평형)	성수기	150,000	• 이용기준 : 1일/4인 - 1인 추가시마다 이용료 10,000원 추가 • 성수가: 7.20~8.25 • 비수가: 나머지 기간 -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 주중: 일~목요일 • 이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비 주말	100,000			비 주말	100,000	
	주중	80,000			주중	80,000	
오토 캠핑장	1일/1인	8,000	• 이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 물놀이시설 이용시 이용료의 50% 할인	오토 캠핑장	어 른	10,000	• 이용기준 : 1일/1인 • 이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야영장	1일/1인	6,000	• 이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포함 • 물놀이시설 이용시 이용료의 50% 할인		청소년·군인	8,000	
					어린이	6,000	
				야영장	어 른	9,000	• 이용기준 : 1일/1인 • 이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청소년·군인	7,000	
					어린이	5,000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개 인			단 체		비고
	어른	청소년 및군인	어린이	어른	청소년 및군인	
요금	3,000	2,000	1,500	2,500	1,500	1,000

[별표 3]

○ 엑스포 주제관 관람료(제7조의2 관련)

(삭 제)